I·SEOUL·U
너와 나의 서울

Seoul Design
서울디자인재단

제51차 정기 이사회

2017. 12. 22

서울디자인재단

제51차 정기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7년 **12월 22일(금), 11:00**

○ **장　　소 :** DDP살림터 2층 북세미나실

○ **참석대상**

- 임 원 : 15명 [선임직 이사12(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8, 근로자이사1, 비상임감사1), 당연직 이사3(이사2, 감사1)]
- 배 석 : 경영단장·본부장·팀장 25명, 이사회 담당, 서울시 관계자 등

○ **보고안건 :** 2건

1. 2017년 주요 사업실적보고
2. 재단 내규 개정 2건 보고
   1) 공무국외 출장심사 내규 개정
   2)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 내규 폐지

○ **상정안건 :** 5건

구 분	상정안건	비 고
1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의안번호 제150호
2	안전분야 용역관리 계획	의안번호 제151호
3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	의안번호 제152호
4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의안번호 제153호
5	DDP대관규정 일부 개정	의안번호 제154호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비 고
1	11:00 ~12:00	이사회 개회선언 및 이사장인사말씀	이사장 진행
2		보고안건 보고	경영단장 진행
3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이사장 진행
4		폐회	이사장 진행

목 차

제150호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05

제151호 안전분야 용역관리 계획 08

제152호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 11

제153호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14

제154호 DDP대관규정 일부 개정 20

보고안건

1. 2017년 주요 사업실적보고
2. 재단 내규 개정 보고

의안번호	제150호
의결연월일	2017. 12. 22

2108년 예산 및 사업계획

제 안 자	기획경영팀
제안년월일	2017. 12. 22

1. 의결주문

○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한다.

2.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에 의거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규모 : 50,137백만원('17년 60,417백만원 대비 17.0% 감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7	증감액	증감율(%)
	합계	출연금	자체재원			
총예산	50,137	30,186	19,951	60,417	△10,280	△17.0%

○ 2018년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예 산	50,137,099
① 자체사업수익	17,254,125
② 출연금	30,186,000
③ 이자수익	88,600
④ 전기이월금	2,608,374

세 출 예 산	50,137,099
① DDP운영	15,845,965
② 패션봉제사업	15,541,000
③ 재단운영사업	18,306,760
④ 예비비	443,374

○ '18년도 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50,1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0% 감소

- DDP 운영수입 등 자체사업수익은 17,2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3% 감소
  - ▸ DDP 운영수입 15,846백만원, 서울패션위크수입 1,284백만원, 디자인문화상품 판매수입 74백만원, 기타 50백만원 등
- 출연금 수입은 30,18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
- 전기이월금은 2,6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4% 감소

○ 2018년 총 세출규모는 DDP운영사업(17,834백만원)을 포함한 50,1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0% 감소

- DDP 운영사업은 15,84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
- 패션봉제 및 재단운영사업은 33,848백만원으로 '17년 시의회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 외에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단 여건에 맞게 추가 편성하였음
- 예비비는 44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

4.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의결사항), 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의안번호	제151호
의결연월일	2017. 12. 22

안전분야 용역관리 계획

제 안 자	시설관리팀, 공간마케팅팀
제안년월일	2017. 12. 22

1. 의결주문

○ DDP 시설통합운영 용역관리 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 종합시설 운영 용역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2. 제안이유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8578, 2016.7.27) 지침에 따라, 시설통합운영을 경험 있는 전문기업에 용역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함

○ DDP시설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업무는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위험작업 빈도가 낮으므로 용역관리가 가능함

3. 주요골자

(1) DDP 시설통합운영 용역관리 사업계획(안)

- **추진배경**

◦ DDP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분야별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

◦ 전문 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매뉴얼 및 추가예산의 미확보

- **용역기간 :** 2018. 3. 1. ~ 2019. 12. 31.(22개월)
- **사 업 비 :** 15,797,428천원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관리인원 :** 174명

시 설												안 전			환 경	
파트장	행정	상황	기계	방재	전기	통신 AV	건축	가구	안내 투어	콜센터	주차	파트장	보안	홀매니저	파트장	미화
1	2	10	8	4	8	8	10	2	17	2	9	1	42	3	1	46
81												**46**			**47**	

◦ 시설통합운영 용역근무자 임금단가 조정

・2018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적용 : 현재까지 2014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적용(3년간 임금인상 무)

・최저급여자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9,211원/월

1,925,099원) ※ 생활임금 : 기본급 + 급식비 + 교통비(시간외, 휴일수당, 연차금 등 미포함)

- 사업발주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낙찰하한율 87.745%)

◦ 소요예산 : 금일백오십칠억구천칠백사십이만팔천원정(₩15,797,428,000)

◦ 계약기간 : 2018. 3. 1. ~ 2019. 12. 31.(22개월)

◦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3.(14일간) - 예정

(2) 서울새활용플라자 종합시설운영 용역관리 계획(안)

- 추진배경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운영위탁은 전문시설위탁업체로 운영관리를 맡겨 법정 선임 자격자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거쳐 전문위탁운영을 함

◦ 건물 준공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시설, 보안, 미화 인력 정원 확보가 어려움

- 용역기간 : 2018. 3. 1. ~ 2019. 2. 28(12개월)

- 사 업 비 : 1,110,000천원 (서울시 계약 심사과 심사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관리인원 : 25명

시 설	안 전	환 경
9	8	8

- 사업발주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낙찰하한율 87.745%)

◦ 소요예산 : 금십일억일천만원정(₩1,110,000,000)

◦ 계약기간 : 2018. 3. 1. ~ 2019. 2. 28.(12개월)

◦ 공고기간 : 2018. 1. 29. ~ 2. 7.(10일간) - 예정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지침

의안번호	제152호
의결연월일	2017. 12. 22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

제 안 자	경영지원팀
제안년월일	2017. 12. 22

1. 의결주문

○「임직원퇴직금규정」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공기업담당관-9317, 2017.07.25.)』의 후속조치 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단의 퇴직급여의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임직원퇴직금규정』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규정 ⇒ **<삭제>**

4. 참고 사항

○ 절　　차 : 이사회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임직원퇴직금규정」일부 개정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의 규정을 삭제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의 받을 때 2.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 ②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삭제>**

의안번호	제153호
의결연월일	2017. 12. 22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 안 자	기획경영팀
제안년월일	2017. 12. 22

1. 의결주문

○ 「이사회 운영규정」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공기업담당관-9317, 2017.07.25.)』의 후속조치 사항

(1) 제5조(이사회 소집) 3항 2호

- 『정관』제26조(이사회의 소집)3항, 『이사회 운영규정』제13조(개의 및 의결)1항,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설립기준』제27조(의결방법)에 의거하여 임시이사회 소집 규정을 정관의 내용과 통일시키고자 함

[관련 규정 내용]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6조(이사회의 소집) 3항>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13조(개의 및 의결) 1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설립기준' 제27조(의결방법) 1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5조(의결방법의 특례) 1항

- 이사회 의결방법의 특례(서면결의)에 해당하는 안건으로 "경미한 사항"의 의미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행정자치부 지방공사의 서면결의 요건을 참고하여 개정함

- <별표3>양식 하단에 "부의안건(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 : 별첨" 내용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서면결의 절차를 양식 자체에 의해 완결될 수 있도록 함

[관련 규정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제28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제16조(권한의 위임) 3항

-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하되, 사전 합의되지 않은 불특정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의 범위를 이사회 의결사항(제7조)중 특정 사항으로 제한함

3. 주요골자

○ 『이사회운영규정』제5조(이사회 소집) 3항 2호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 『이사회운영규정』제15조(의결방법의 특례) 1항

: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 **"부의할 안건 중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추가

<별표3>에 **"부의안건(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 : 별첨"** 내용 추가

○ 『이사회운영규정』제16조(권한의 위임) 3항

: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당해 회의에 한정하여 <별표6>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제7조의 의결사항 중 위임장에 명시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참고 사항

○ 절　　차 : 이사회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이사회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이사회의 소집) 3항 2호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 제15조(의결방법의 특례) 1항, <별표3>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별표3> 서식에 의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3> **※부의안건(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 : 별첨**

○ 제16조(권한의 위임) 3항

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한정하여 <별표6>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제7조의 의결사항 중 위임장에 명시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정관 제10조제 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정관 제1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5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별표3> 서식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업무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별표3> 서식에 의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6>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한정하여 <별표6>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제7조의 의결사항 중 위임장에 명시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별표 3 〉

제 차 (정기·임시) 이사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부의안건(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 : 별첨

의안번호	제154호
의결연월일	2017. 12. 22

DDP대관규정 일부 개정

제 안 자	홍보마케팅팀
제안년월일	2017. 12. 22

1. 의결주문

○ 『DDP 대관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전년도와 대관료가 동결되어 『DDP대관규정』제9조(대관료) 1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대관료 인상 필요 ※ 2018년도 대관료 조정 근거 자료 참고

<DDP대관규정>

제9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

3. 주요골자

○ **2018년도 대관료 조정**

- 알림관, 디자인전시관 : **4.5%인상**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	대관료(원)	
				현행	개정안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19,445,000	**20,321,000**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	**10,512,000**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	**2,815,000**
	준비실		238 (72평)	1,547,000	**1,61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368평)	2,797,000	**2,923,000**

※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

※ 알림터, 배움터 디자인전시관을 제외한 나눔관, 야외공간 등의 대관 공간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대관료 인상하지 않음

4. 참고 사항

○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

○ 기　　타 :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2018년도 대관료 조정 근거 자료]

○ DDP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정함(DDP대관규정 제9조1항)

<주요 원가 요인 인상률>

주요 항목	2017년도	2018년도	산출 근거
인 건 비	3.5%	3.5% 예상	사업계획서 기준
도시가스	14.1%	3~5% 예상	연 납부액 기준
전 기 료	3.5%	3~5% 예상	연 납부액 기준
상하수도	-12.8%	3~5% 예상	연 납부액 기준

○ MICE 산업 활성화 제고 및 전시업계 수년째 관람료 현상 유지 기조를 감안하여 유사 업계 대관료 4.5% 인상 수준에 맞춤

<유사업계 비교 자료>

① 유사 업계 2017년도 대관료 인상률 (DDP만 동결)

■ **COEX** : 6.8% 인상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인상률
HALL A 요율단가	2,050원/㎡	2,190원/㎡	6.8%

※ 산출 근거: COEX 홈페이지 공개 자료(회의실, 임대료 안내)

■ **예술의전당**: 4.5% 인상

공 간		면적(㎡)	2016 년도	2017 년도	인상률
한가람미술관	제 1 전시실	721	966,000 원	1,010,000 원	4.5%
	제 2 전시실	486	651,000 원	680,000 원	4.5%

※ 산출 근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개 자료(대관 규정)

② DDP 대관료 유사 업계 수준 비교

용도	DDP 대관료		비교 시설 대관료		비 고
국제회의,행사	알림1관	6,500원/㎡ (총면적 2,992㎡)	**COEX** (그랜드볼룸 ROOM#101~105)	9,734원/㎡ (총면적 1,817㎡)	- 대관료 차이 주요 이유 · COEX의 경우 공간조성 비용 등 반영 : 의자, 가구, 매트 등
전시	디자인전시관	2,797천원/일 (총면적 1,21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2전시실)	2,556천원/일 (총면적 1,207㎡)	장기 전시 기준 (3개월 이상)

※ 산출 근거: COEX,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개 자료 분석

③ 전시업계 최근 3년간(2015~2017년도) 평균 관람료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평균 관람료 (전년대비 증감액)	13,857원 -	13,200원 (↓657원)	13,222원 (↑22원)

※ 산출 근거: '15~'17년도 DDP, 예술의전당,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게재 유료 전시 관람료 조사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DDP 대관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 **2017년도 DDP 대관료는 2017.12.31. 까지 적용하고 [별표2] 2018년도 DDP 대관료는 2018.1.1.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관 협의 시 재단의 승인에 따라 대관비용을 사전에 결정한 경우 승인된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DDP 대관료 '17·'18년도 대비표

2017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19,445,000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
	준비실		238 (72평)	1,54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

라. 부속시설

(단위: 원/일)

	부속 시설	면적(㎡)	대관비용(원)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4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60,000
	비지니스라운지_B1	86(26평)	330,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757,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2018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20,321,000**
	알림2관		1,547 (468평)	**10,512,000**
	국제회의장		414 (125평)	**2,815,000**
	준비실		238 (72평)	**1,61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923,000**

라. 부속시설

(단위: 원/일)

	부속 시설	면적(㎡)	대관비용(원)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6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90,000**
	비지니스라운지_B1	86(26평)	**345,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757,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별표2] 2018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2)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20,321,000
	알림2관		1,547 (468평)	10,512,000
	국제회의장		414 (125평)	2,815,000
	준비실		238 (72평)	1,61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923,000

1) 알림터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율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율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율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

나. 살림터

(단위: 원/일)

명 칭		면 적(m^2)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3,925,000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회의 (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 (m2)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	873,000	537,000

라. 부속시설

(단위: 원/일)

	부속 시설		면적(㎡)	대관비용(원)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6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90,000
		비지니스라운지_B1	86(26평)	345,000
배움터	둘레길 쉼터		470(142평)	757,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원/일)

목 적		장소	대관료(원/일)	기 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디자인둘레길	요율×사용면적	1,150/㎡
		디자인거리(국기봉)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기타(공원 등)	500,000	3×3m
광고촬영(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등)	3,000,000	3시간

1) 야외공간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율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율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율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프로모션 및 부스 (A)' 중 '디자인둘레길' 제외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할인율을 적용	50%
④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등 별도 조건에 따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4.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보 고 안 건

연번	보 고 내 용
1	**2017년 주요 사업실적보고**
2	**내규 개정 결과보고 (2건)** (1) 공무국외출장심사 내규 개정의 건 (2)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 내규 폐지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내규 개정 (17.11.17일자 개정)

○ 개정사항 : 제1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신설

○ 개정사유 :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촉진 필요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1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보고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무국외여행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좌석 승급 가능 기준:** **가.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 **나.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다.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라. 동행하는 비즈니스 좌석 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마.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2.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사전 출장 계획 방침에 이를 명시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음. 단, 결과보고 시 이용내역 및 증거서류 제출 필요**

2.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내규 폐지(17.12.06)

○ 폐지사유 : 『광화문광장 시설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반환 요청(역사도심재생과-8930, 2017.07.11.)』에 의거 광화문 한글누리 운영을 종료하고 폐업신고 완료함에 따라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 내규를 폐지하고자 함.